

---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단 체 협 약

---



2020. 12. 29.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단체협약

## 전 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이하 “전교조”라 한다)는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 【적용범위】

본 단체협약은 교육청과 전교조, 그리고 공립학교 교원인 전교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 제2조 【협약의 존중】

교육청은 본 협약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교조와 협의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 제3조 【조례·규칙의 제·개정】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교조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 제2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 제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① 교육청은 정교사(2급교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정교사(1급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대한 연수경비를 지원하고, 연수여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되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 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연수기관에 납부하는 연수경비 교원 1인당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고, 출장 처리한다.
- ④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는 학교당 일률적인 인원 배정을 지양하고, 연수대상자는 가급적 경력,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단, 의무연수과정은 예외로 한다.
- ⑤ 교육청은 교육청 주관 연수프로그램 편성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교조는 수요조사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⑥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⑦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사·교장·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⑧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자율 연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 ⑨ 민간·공공기관(단체)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은 특수분야 연수기관 심의·관리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 예정일 6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며, 연 2회 신청·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연 1회 추가 신청·심의할 수 있다.

### 제5조 【연구 환경 조성】

- ①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과모임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며, 전문성 있는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② 교육청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 ③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및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학교 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 ④ 교육청은 교원이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으로 하며,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⑤ 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학습연구년제가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자율연수휴직이 유급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 ⑦ 교육청은 교과·학년별 연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교에 교과·학년별 연구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교과·학년 협의회비가 학교 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 ⑧ 교육청은 NEIS 개인번호가 연수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직무연수 이수 실적을 NEIS에 등재하도록 하고, 향후 모든 직무연수에 적용되도록 노력한다.

### 제6조 【컨설팅 장학】

컨설팅 장학은 학교의 희망에 따라 실시한다.

### 제7조 【연구학교】

- ① 교육청이 자체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 공모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이전 (전년도 말)에 완결하여 학기 중에 추가로 공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연구학교 선정심의회를 구성할 때 교원의 경우 대표성이 있는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연구·시범·교육실습협력학교 공모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단,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을 통해 지정취소 등을 포함하여 행정 조치한다.
  1. 연구·시범학교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를 거쳐 교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모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실습협력학교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를 거쳐 응모하며, 교원 동의를 심사에 반영한다.
- ④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승진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연구·시범학교 사업을 2개 이상 신청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⑤ 교육청은 연구·시범학교 공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다.

## 제3장 인사제도 및 근무조건 개선

### 제8조 【교원 승진 및 인사제도 개선】

- ① 교육청은 혁신미래교육 확산에 적합한 교원승진체계가 마련되도록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인사의 임용과 승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장공모제의 입법화 취지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 【학교인사자문위원회】**

-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도록 지도한다. 각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 1. 교무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2. 보직교사 임면에 관한 사항
  - 3. 교과담임과 학급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 4. 포상 후보자와 각종 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5. 기타 교원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 ② 교육청은 각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제10조 【교원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은 교원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초등 전보협의회 포함)에 전교조를 포함한 교직단체 위원을 30%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전보업무 추진 과정에 참관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전보 제도】**

- ① 교육청은 전보유예, 전입요청 및 초빙교사제를 최소화하여 정기전보의 일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다. 단, 자율학교 인사원칙은 별도로 정한다.
- ② 교육청은 특성화고 전보유예, 전입요청, 초빙 비율을 일반고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중등교사 전보업무는 예산편성, 프로그램 개발, 모의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산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④ 교육청은 교원의 정기전보 발령을 학사일정과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앞당겨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은 중등교사 정기전보 대상자의 학교별·과목별 예상 인원을 내신 희망원 작성 전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⑥ 교육청은 해당 교원이 본인의 전보 자료를 공개 요청할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 ⑦ 교육청은 소속 교원 중 시·도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부부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동일 시·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 【법정교원수 확보 및 교육지원 강화】**

- ① 교육청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 각 학교급의 학급당 학생수가 OECD 상위 수준(최대 20명 이내)이 되도록 교원 정원수 및 정규직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한다.
- ② 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원 총 정원이 증가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의견을 개진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에서 사회복지요원을 신청할 경우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서울 공립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원 인력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제13조 【기간제 교원 임용조건 및 처우개선】**

- ①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조건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육청, 기간제 교원, 교육청 소속 고용노동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약직 교원 운영지침 배포 전에 회의를 개최한다.
- ②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의 정근수당 관련 지침을 보완하여 기간제 교원의 근무 연수와 실 근무기간을 반영한 정근수당이 2022년부터 지급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6개월 이상 계약한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기간제 교원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다른 근무처에 임용되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학교별로 진행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평가에서 본인이 요구할 경우 본인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제14조 【학습지도안의 자율적 작성】**

교육청은 학습지도안, 주간학습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폐지하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이수 집계표는 수기작성하지 않는다. 또한 연간 지도계획은 교과·학년 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한다.

## 제15조 【교원의 업무 정상화】

- ① 교육청은 교사(특수, 보건 포함)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무 행정업무는 최소화하며, 일반 행정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특히 담임교사는 수업 및 생활 지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맡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교무일지, 각종 누가기록부, 학생생활 지도일지, 1교사 1학생 지도·상담일지, 특별실 사용일지, 교과진도표 등 일체의 장부)는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하되, 교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비치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개인봉사활동계획서 사전 승인은 담임 전결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 ④ 학생상담기록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활용하고 따로 결재하지 않는다. 단, 전문상담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기록 및 학교장이 법령에 따라 지정한 상담의 기록은 예외로 한다.
- ⑤ 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공문 생산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공문에 표시하도록 하며, 보고를 요하는 공문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를 두고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교육청은 업무메일, 전자우편을 통한 보고 요구를 지양하고,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한 홍보성 공문은 통합게시판을 통해 안내한다.
- ⑦ 각급 학교의 교무업무 관련 공문서는 교감(원감)을 포함한 교육지원팀이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 ⑧ 교육청은 각종 외부행사에 교원, 학생, 학부모 동원을 억제한다.
- ⑨ 교육청은 학교자생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 ⑩ 교육청은 등·하교 학부모 교통봉사에 지자체 등의 지원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⑪ 교육청은 학교장이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여 결재단계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 ⑫ 교육청은 국회·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시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급적 이미 구축된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한다.
- ⑬ 학교교육계획서와 교육과정계획서는 학교 특색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⑭ 교육청은 교원의 당직을 면제하여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한다.

1. 학기 중 주변교사, 당번교사 제도를 폐지한다.
  2. 방학,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
- ⑮ 근무상황카드(출근보조부) 또는 출·퇴근시간 기록부는 폐지한다.
  - ⑯ 교육청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위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를 교사의 자율성에 반하여 조직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⑰ 교육청은 교사가 학교단위 미세먼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 ⑱ 교육청은 학교에서 시간강사, 기간제 교원 채용 관련 업무 시 행정업무가 최소화되도록 업무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한다.
  - ⑲ 교육청은 먹는 물, 수질, 공기질, 놀이터 모래질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㉑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담당해야 하는 영어 원어민 관리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 ㉒ 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과서 주문, 배부, 정산 등 관련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 ㉓ 교육청은 단체협약에 의해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폐지된 각종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존속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한다.
  - ㉔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근무시간 외에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제16조 【생활기록부 업무의 간소화】

- ① 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급의 특성에 맞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17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 ① 교육청은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별 실정에 맞는 부서체계와 업무분장을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중등의 경우 담임교사는 가급적 학년부에 배치하며 같은 교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 ② 수업시수는 학교별·교과별 교사 현황 및 특성,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결정한 협의체(교과협의회, 교육과정위원회, 교직원회의 등)에서 조정하도록 권장한다.
- ③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은 단위학교에서 교사 결원으로 인한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원 및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④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임용사유 발생 시 학교장으로 하여금 적기에 임용하여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지도하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란을 운영하여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기간제 교원 및 강사를 임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⑤ 교육청은 부득이 해당 학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적정액의 보결수업수당을 단위학교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⑦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업무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⑧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 ⑨ 교육청은 조퇴, 외출, 지각의 경우 NEIS 결재를 받도록 하되, 별도의 대면 또는 구두로 허락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⑩ 교육청은 교사가 휴가(연가, 조퇴, 외출, 지참)를 신청할 때 연가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며, 조퇴·외출·지참은 사유를 기재하되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⑪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토요일무일 근무를 강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제4장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 제18조 【재난시기 교육과정 등】

- ① 교육청은 재난시기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전교조를 포함한 교직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 ② 교육청은 재난시기 각급 학교 지원방안에 대하여 전교조를 포함한 교직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 제19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인건비 제외) 대비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1% 이상을 각각 책정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민간학술데이터베이스 및 국가전자도서관 원문정보를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시설·설비 기준에 의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독서 위생)를 위해 환기·채광·조명·온습도 조절을 위한 설비를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 ④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사서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창의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매년 학교도서관 및 관련 직무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사서교사 1인 근무가 곤란한 초등학교 도서관과 학급수 43학급 이상, 학생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에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⑦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나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다른 업무는 경감되도록 지도한다.
- ⑧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과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여러 제반사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각급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치도록 지도한다.

### 제20조 【교수·학습과정】

- ①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
- ②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단체가 추천한 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평가비율에 관해 법규 및 교육부지침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현장교원 및 교직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수립한다.
- ④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과원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과원 교사 발생 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비정기전보, 순회교사, 복수전공연수, 과목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 ⑤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 학교는 정규수업을 마치고 훈련에 임하도록 한다.
- ⑥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⑦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에 있어 표준화도구만을 강제하지 않으며, 학급별, 교사별 진단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⑧ 교육청은 문·예·체 분야의 협력수업 지원사업을 지속한다.
- ⑨ 교육청은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을 폐지한다.

### 제21조 【민주적인 학교운영】

- ①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선출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무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규정을 제정하도록 지도한다.
  1.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회의규정을 준수한다.
  2. 단순 정보전달형 회의를 지양하고, 학교현안 문제와 교육주제 중심의 회의로 운영한다.
  3.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교무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으로 포함한다.
  4.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운영에 반영한다. 단, 필요시 재논의한다.

### 제22조 【방과 후 교육활동】

- ①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 ② 교육청은 초·중학교의 경우 경시대회와 특목고 진학, 각종 시험을 목적으로 한 방과 후 학교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일반계고에서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 및 경시대회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초등 돌봄 겸용교실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운영에 협력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제23조 【자율학습 등】

- ① 교육청은 자율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경비를 징수하거나 불법 모금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중·고등학교의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초과근무한 교사에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 **제24조 【감사제도】**

- ① 교육청은 학교 감사 시 교원의 교무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는 가급적 교육전문직이 담당하도록 하고, 학교자율종합감사를 확대·운영한다.
- ②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안내한다.
- ③ 교육청은 감사 시 점검하는 내용이 단체협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 **제25조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제회의 이사회 및 제5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26조 【교육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합리화】**

- ① 교육청은 학교 예산 편성 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학교 예산 및 결산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 **제27조 【학부모 부담 교육비 경감】**

앨범, 교복, 체육복 등 학부모부담 교육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

#### **제28조 【사립학교 지도·감독】**

- ①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 교원의 채용을 억제·시정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정규교원 비율이 가급적 공립학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사립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공립과 동등한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재정결함지원 대상인 사립학교의 폐과, 학급수 감축 등의 사유로 과원이 발생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 과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 ⑤ 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 ⑥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설치·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고 그 내용을 공표한다.
- ⑦ 교육청은 사립학교 인사비리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엄정히 수행한다.
- ⑧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들의 질병휴직 기간 최대 2년 이내 사용과 자율연수 휴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⑨ 교육청은 소청결과를 미이행하는 사학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기간제 교원 임용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낮은 법인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 ⑩ 교육청은 신규교사 위탁채용 2차 시험(수업시연, 면접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교사 채용 매뉴얼 보급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한다.
- ⑪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을 위해 성별,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⑫ 교육청은 본 단체협약 내용 중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에 지도한다.

## 제5장 교권 및 후생복지

### 제29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② 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 소송 진행 등을 위하여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청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제30조 【교원의 문화 활동 지원】

교육청은 직영하는 문화·체육 시설을 교원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 제31조 【교원의 후생복지】

- ① 교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남·녀 휴게실을 각각 설치하고,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냉·난방기를 비롯한 휴게실 설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여교사 휴게실에는 온돌 또는 침대를 구비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 시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건강진단 항목에 성인병(6대 암 등) 및 성대결절, 하지정맥류 등이 포함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인후염, 성대결절 등으로 인해 수업진행이 어려운 교사를 위해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용 무선마이크 및 앰프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2조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

- ①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지문인식기를 운영하고자 할 때, 운영하기 전에 교사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카드, 수기장부 등)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교사 업무용 안심번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또한 각급 학교운영비에 안심번호 운영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동 내용을 명기한다.
- ④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 ⑤ 교육청은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운영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⑥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절차에 따라 공무상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 ⑧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를 지원한다.
- ⑨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형사상 소송비용을 요건에 따라 지원한다.
- ⑩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위협대처 보호를 위한 긴급 경호, 밀착 경호, 차량 지원 등을 제공한다.
- ⑪ 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 ⑫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청에 의해 변호사 또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사안에 대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 ⑬ 교육청은 각급 학교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⑭ 교육청은 학교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접수된 사안의 종류와 경중을 고려하여 조사 및 감사 처분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 한다.
- ⑮ 교육청은 학교 내 갑질 사례와 예방안을 만들어 배포한다.

### 제33조 【공익제보자의 인권보호】

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공익제보자가 공개에 동의하여 표창을 신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등에 따라 이를 검토한다.

### 제34조 【출장 여비와 연구비】

- ① 교육청은 교육 활동(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야영, 수학여행, 교외 특별활동 등) 및 교육 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출장 중에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면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원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와 국내가족여비를 지급한다.

- ③ 교육청은 교사가 단위학교에서 정한 수업시수를 초과하여 수업한 경우, 초과 수업시수에 대한 수업연구비는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사 간에 차이가 나지 않게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교원연구비를 교원 간 차이가 나지 않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증액을 위해 노력한다.

### 제35조 【맞춤형복지포인트】

교육청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복지포인트 액수를 상향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36조 【학급운영비】

- ① 학급운영비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간 학급당 2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이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급운영비는 학교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증액하도록 노력한다.

### 제37조 【체육복 및 실습복】

- ① 교육청은 체육교사(초등체육전담교사 포함)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가 학교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교육활동에 별도의 실습복이 필요한 실습담당교사의 피복비가 학교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 제6장 성평등과 출산·육아 권리 보장

### 제38조 【출산과 육아의 권리】

- ①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원의 출산과 육아의 권리를 위하여 교원이 출산휴가, 육아시간을 신청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사의 출산휴가를 조산,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여교원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회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유급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임신 중인 여교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 ⑤ 교육청은 자녀 출산 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남교원의 특별휴가 10일을 보장하도록 한다.
- ⑥ 교육청은 출산한 여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⑦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돌보는 교사에게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지도한다.
- ⑧ 교육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포함) 후 1년 미만인 여교사에게는 정규 수업 이외의 근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⑨ 교육청은 육아휴직 교원이 복직하는 경우 원적교 복직을 원칙으로 한다.
- ⑩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 시 자녀돌봄 시설을 운영한다.
- ⑪ 교육청은 임신 중인 교사가 전보유예 희망 시 우대한다.

### 제39조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등】

- ① 교육청은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1. 연 1회 이상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집합교육 실시
  2.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집합교육에 기관장 필수 참여
  3.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4.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5.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6. 성희롱 고충담당자에 대한 연수 및 업무 지원
  7.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계기관 신고 및 상급기관에 보고
  8. 성희롱 피해자 보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정기전보 신청기간 전이라도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 조치
- ② 교육청은 교장, 교감 등의 자격연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2시간 이상 확보한다.
- ③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의 전 연수강좌(대면, 비대면)에 성차별적 요소를 모니터링하여 개선한다.
- ④ 각 교육지원청에 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 예방 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 ⑤ 교육청은 디지털 성폭력 예방 예산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 연수 및 학부모 연수와 학생 교육을 실시한다.

**제40조 【성평등한 서울교육 문화 조성】**

- ① 교육청은 일체의 사업, 정책, 교육자료, 홍보물 등에 대하여 성편견이 드러나는 문구, 삽화 또는 디자인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 업무분장 시 성별 고정관념, 혼인 여부 또는 자녀 유무에 근거한 차별적 업무분장을 근절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졸업식 등의 학교 행사 시 성차별적인 역할 분담을 근절하도록 지도한다.
- ④ 교육청은 성별 이분법적이고 성차별적인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성평등한 용어 사용을 활성화한다.

**제7장 유치원 · 특성화고 · 특수 · 보건 · 영양**

**제41조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 ① 교육청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질 개선을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위원회, 유치원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교직원체가 추천하는 교사를 포함한 현장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교실 확보에 노력하고, 방과후 과정 운영 시 관리, 인사채용 및 보결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유치원 교육계획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별도로 결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장학 및 학교평가 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⑤ 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업무정상화 관련 사업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아교육과에서 관련 TF를 운영할 때 전교조가 추천하는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수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를 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 ⑦ 교육청은 유치원 교원이 교원학습공동체,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자격 및

직무연수 등의 참여 기회에서 초·중·고 교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방학 중 연수 및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2조 【특성화고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 ① 교육청은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체제 개편, 학과개편 등 주요 정책 수립 및 평가와 각종 연구용역 시 전교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 ② 교육청은 전문교과 교원의 전공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 현장연수를 강화한다. 또한 특수분야 산업체 연수를 포함한 개별연수 지원을 확대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에서 실험실습비가 전공심화동아리반(기능영재반) 운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며, 전공심화동아리반(기능영재반) 지도교사의 승진 가산점제를 폐지하고, 전공심화동아리반(기능영재반) 훈련을 위한 수업 결손을 금지한다. 또한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없는 직종은 학교에서 전공심화동아리반(기능영재반)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④ 교육청은 교원노조와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학기마다 실시한다.
- ⑤ 교육청은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홍보로 인하여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⑥ 교육청은 특성화고 학교기본운영비 중 기자재 수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기자재 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 ⑦ 교육청은 각종 박람회(직업, 창업, 진로 등)가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직업교육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 ⑧ 교육청은 혁신적인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 직업교육 모델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⑨ 교육청은 특성화고의 실습실무사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⑩ 교육청은 특성화고의 실습기자재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보고 등 기자재 관련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습일지는 폐지하며, 소모품대장은 학생의 원활한 교수·학습을 위하여 실습 재료, 실습 현황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⑪ 교육청은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
- ⑫ 교육청은 유해인자 발생 실습에 참여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⑬ 교육청은 통합표시과목 연수는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해당 교과목의 과원이 아닌 한 임용 당시의 표시과목 위주로 발령을 낸다. 단,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한다.

- ⑭ 교육청은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취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시행한다.
  1. 현장실습지도 및 추수지도 관련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2.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 1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고졸 취업 기회 확대,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발굴, 고졸 서울시 공무원 및 교육청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 ⑮ 교육청은 특성화고 3학년 학생 현장실습 실시 전에 직업윤리,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및 안전교육 등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1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 ⑯ 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가 산·학·관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여 특성화고의 취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 제43조 【특수교육 여건 개선】

- ① 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특수교사의 업무정상화를 위하여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특수학생이 입급된 일반학급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적게 배정하도록 권장한다.
- ④ 교육청은 특수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특수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보조인력 채용 및 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1.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지무요원) 관련 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한다.
  2. 체험활동 보조인력 지원 안내 공문에 교육공무직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준 및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3. 교육청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일일채용 보조인력 인력풀 제도를 마련하여 일일채용 보조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⑥ 교육청은 특수교사의 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 ⑦ 교육청은 특수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교(원)장 교(원)감 회의 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의 교권침해예방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2. 교육청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⑧ 교육청은 특수교사의 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장애 관련 법정 의무교육 시행 방법을 개선한다.
1.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원격교육과정을 개설한다.
  2. 교육청 보고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실적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 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에 요구되는 인건비는 학교장이 학교운영비로 편성 집행하도록 권장한다.
- ⑩ 학교 학급수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사업(교수용 TV, 교사용 컴퓨터 배치 등)에서 특수학급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 ⑪ 교육청 공문 발송 시 공립 및 사립 특수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 ⑫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교원에게 ‘교육과정 재구성 및 일반 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에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 ⑬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특수교육 담당업무 외에는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⑭ 특수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기자재 보급 예산을 지원한다.(고등학교 기준)

#### 제44조 【보건교육 여건 개선】

- ① 교장, 교감 자격연수 시 감염병 예방 등 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이 1시간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43학급 이상 학교는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학생수 1,000명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의 수업지원 및 업무경감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하되, 선택교과 운영 및 수업시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④ 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 제45조 【영양교육 여건 개선】

- ① 교육청은 영양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감 이상의 각종 자격연수 또는 직무연수 시 학교 급식 및 영양교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영양교사의 병가, 특별휴가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 급식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간제 교원 인력풀제를 운영한다.
- ④ 교육청은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의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양상담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영양상담실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부 구조 및 설비 기준 등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 제8장 교육환경 및 교육복지

#### 제46조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 ① 교육청은 교실의 실내 실측 온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예산 편성 시 냉·난방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 경비를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에 대해 정기적으로 청소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실의 조도는 300룩스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도로와 인접한 학교 중 소음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단열에 필요한 이중창 및 해충 차단을 위한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각급 학교 모든 교실의 실내공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실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1. 학교 신·개축 시 일반교실 및 관리실에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한다.
  2. 교실의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하며, 필요시 적정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지 구비, 건조기 비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며, 온수 수세시설을 완비하고, 화장실 내부 또는 별도의 장소에 양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 ⑦ 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의거 각급 학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노력한다.

- ⑧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친화적 소재로 교체하며, 학교 신·개축 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⑨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위험이 수반되는 청소(체육관, 고층 유리창 등 포함) 시 외부인력 등을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 ⑩ 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실에 있는 컴퓨터의 사양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 ⑪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시설 및 학생수를 고려하여 학교 청소 담당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제47조 【학생 복지】

-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 매점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금지품목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 화장실 용변기 개수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화장실 시설을 현대화 하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 ④ 교육청은 학생 복지를 위하여 시설사업 추진 시 탈의실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기존 학교는 학교 실정에 따라 남·녀 학생 탈의실을 설치·활용하도록 지도한다.

#### 제48조 【학생 자치활동】

- ①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학생 자치활동 공간(학생회의실, 동아리실 등)을 확보하고, 일정규모 이상 쾌적한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한다.

#### 제49조 【학교 급식의 개선】

- ① 교육청은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교조에서 추천하는 교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GMO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정책을 수립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급식시설 현대화(오븐기, 냉·난방시스템 등)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제9장 노동조합 활동

### 제50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① 교육청은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교육청은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교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전달·게시·연수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조합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청과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
  2.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정책협의회
  3. 대의원과 중앙위원으로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지부대의원대회 참석
  4. 지부 집행위원으로서 집행위원회 참석
  5. 지부 각 부서장의 회의 참석
  6. 노사가 합의한 교육 및 행사
- ④ 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노조가 주관하는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내·외 연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교육청은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에서 신규임용자 연수과정 및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운영할 때 30분 내외의 교원노조 홍보시간을 부여하고, 연수자료집과 함께 전교조 소개자료를 배포한다.
- ⑥ 교육청은 전교조의 전임자가 임기를 마치고 복귀할 시에는 원칙으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발령한다.
- ⑦ 교육청은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과 직속기관이 운영하는 기관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전교조서울지부 홈페이지를 연결한다.
- ⑧ 교육청은 교내의 교원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교원노조 게시판을 설치한다.
- ⑨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 ⑩ 교육청은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에 전교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51조 【노조 활동 중 재해】

교육청은 전교조의 전임자 또는 비전임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 연금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법령 개정 시 의견을 제출한다.

#### 제52조 【전교조와 사전 협의】

교육청은 공무원노조 등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 제53조 【부당노동행위 예방】

- ①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자격 연수 과정에 교원노동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노동 관련 과목의 개설·운영에 있어 강사와 강의 내용은 사전에 전교조와 협의한다.

#### 제54조 【편의제공】

- ① 교육청은 전교조가 교육행정·연수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전교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 정보에 대하여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사본이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
- ③ 교육청과 전교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통지한다.
  1. 교육감이 통지할 자료
    - 가. 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조직표
    - 나. 교육통계연보 등 교육청 등록 각종 간행물

- 다. 전교조가 요청할 때 각급 학교에 보내는 교직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 여건에 관련된 공문
  - 라. 교원의 정기인사발령
  - 마.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 자료
  - 바. 매 년도 발간하는 서울교육 주요업무
2. 전교조가 통지할 자료
- 가. 규약의 변경사항
  - 나. 전교조의 임원 현황
  - 다. 전교조가 발행하는 각종 정기간행물
- ④ 교육청은 전교조가 교육청에 각종 문서를 발송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첩을 요구할 경우 교육적으로 필요한 문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⑤ 교육청은 전교조서울지부 사무실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한다.

#### **제55조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교육청과 전교조는 단체협약 이행점검, 서울교육정책, 교육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협의는 분기별로 1회, 4시간 내외로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 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2. 대표는 국장급 이상으로 하고, 2회는 교육감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협의 안건은 상호 간에 1주일 이전에 통보한다.

#### **제56조 【조합비일괄공제】**

교육청은 전교조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대상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 제공을 동의한 조합원에 한하여 전교조에 공제내역을 통보한다.

## **부 칙**

#### **제1조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 제2조 【협약갱신】

교육청과 전교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교육청과 전교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 【이행계획서 작성】

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초안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작성한 뒤, 전교조와 의견 조율을 거쳐 유·초·중·고등학교(사립유치원 제외)에 배포한다.

### 제5조 【이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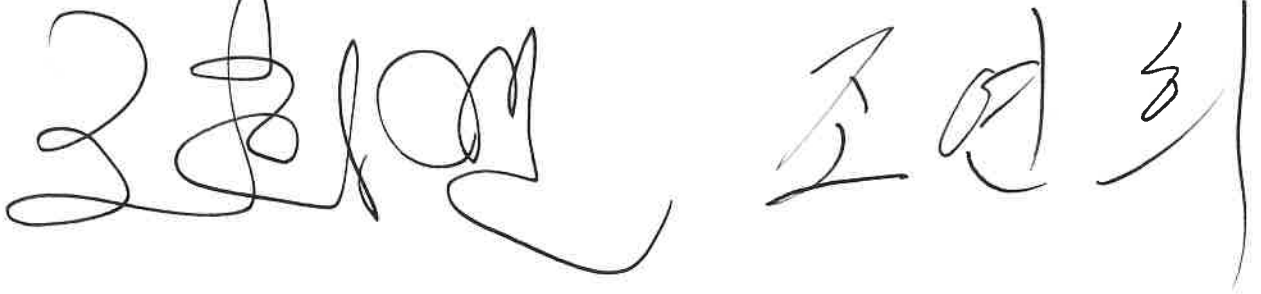
- ① 교육청과 전교조는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계획 및 결과를 정책협의회에서 점검한다.
- ② 전교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이행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연 1회 전교조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점검 사항을 선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④ 교육청은 본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학교장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회의 등을 통해 안내한다.
- 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및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 제6조 【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전교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20. 12. 29.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장 조연희

Handwritten signatures in black ink. The signature on the left is for Jo Hee-yeon (조희연) and the signature on the right is for Jo Yeon-hee (조연희).